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
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“월평균보수”를 “월 보수액”으로 변경하고,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919호, 2022. 6. 10. 공포, 2023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, 노무제공자의 “월평균보수”는 “월 보수액”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

(안 제56조의7제3항~제5항)

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

나.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(안 제48조제1항·제2항)

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,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예술인·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(안 제28조제3항)

예술인·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,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라.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9조의3, 제56조의6 등)

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(제19조의3)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,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(제56조의6)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,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2. 8. 1. ~ 9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8조의3제6항제2호”를 “제48조의3제8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”를 “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월평균보수가”를 “월 보수액이”로 한다.

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(前月)에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제1호 중 “법 제48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48조의3제3항”으로, “월평균보수, 제19조의3”을 “월보수액, 제19조의3”으로, “산정한 월평균보수,”를 “산정한 월평균보수,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,”으로 한다.

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또는 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

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”를 “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신고”를 “신고(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충액 신고는 제외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”를 “제56조의6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”로 한다.

제48조의 제목 “(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)”를 “(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33조제5항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“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, 재인가 제한 기간 중에 취소사유가 다시 확인된 경우 그 재인가 제한 기간은 기존 제한기간과 합하여 1년 이내로 한다.

1. 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: 인가취소일부터 1년
2.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: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

3.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된 경우: 폐지신고일부터 3개월

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폐지 신고한 보험사무대행 기관이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인가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폐지 신고에도 불구하고, 제1항에 따른 재인가 제한기간을 적용한다.

제56조의6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1항) 및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법 제48조의3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48조의3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및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법 제48조의3제3항”을 각각 “법 제48조의3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법 제48조의3제4항”을 “법 제48조의3제6항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은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보수액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1제3항·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,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

보수액으로 한다.

②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.

제56조의7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(이하 “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피보험자관리등 지원금: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신고와 제56조의6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
2. 징수사무 지원금: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를 기한 내에 한 경우

④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.

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사무를 이행한 때 분기가 끝나는 날(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말한다)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12제2항 중 “제19조의3제5항”을 “제56조의6제2항”으로, “월 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”을 “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4조의13제2항 중 “제19조의3제5항”을 “제56조의6제2항”으로, “월 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”을 “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[법 제11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6조의10제1항·제2항,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]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나. ~ 다. (생략) → 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) 법 제11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2) 법 제12조(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(생략)	법 제50조 제1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	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다. 법 제29조의3제1항(제48조의2제	법 제50조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제1항제2호			
(생략)				
마. 법 제44조(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	법 제50조 제1항제3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(생략)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준보수의 적용) ① (생략)	제3조(기준보수의 적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3조제2항(법 제48조의2 제8항제2호 및 <u>제48조의3제6항제2호</u>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.	② ----- <u>제48조의3제8항제2호</u> -----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>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</u> 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.	④ ----- <u>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</u>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노무제공자[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(이하 “단기노무제공자”라 한다)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	2. -----

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]의 개인별 <u>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</u> 제19조의3(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단기노무제공자</u> 5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,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노무제공자 6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	----- ----- <u>월 보수액이</u> ----- ----- 제19조의3(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(前月)에 지급한 보수 또는
---	---

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
한다. 이하 같다)가 월별보험료
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(前月)에
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
한다. 다만, 사업주 또는 노무제
공플랫폼사업자가 제5항에 따
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
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
조의11제3항·제4항 및 제104
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
격 취득 신고, 이 영 제19조의7
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
결 신고와 이 조 제5항에 따른
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
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
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.

⑤ 제3항제5호·제6호에 해당
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 또는
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항
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
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
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
다.

⑥ 삭 제

보수액으로 한다.

<삭 제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
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2
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
라 산정한 월평균보수, 제19조
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

1. -----
----- 법 제48조의3제3항

----- 월보수액, 제19조의
3----- 산정한 월평균보

수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 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·제104조의12제3항·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

2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29조의2(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) ① (생략)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.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,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

수,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,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제29조의2(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(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---. -----

업자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19조의 3제5항에 따른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.

④·⑤ (생략)

제48조(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)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
3.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
4.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

----- 제56조의6
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등) 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“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하며, 재인가 제한 기간 중에 취소사유가 다시 확인된 경우 그 재인가 제한기간은 기존 제한기간과 합하여 1년 이내로 한다.

1. 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: 인가취소일부터 1년
2.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: 인가취소

<신 설>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6조의6(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) <신 설>

일부터 6개월

3.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된 경우: 폐지신고일부터 3개월

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를 폐지 신고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인가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폐지 신고에도 불구하고, 제1항에 따른 재인가 제한기간을 적용한다.

③ ----- 법 제33조제5항-----

-----.

제56조의6(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)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은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보수액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

<신 설>

①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”이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.

②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”이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,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

104조의11제3항·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,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.

②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.

③ 법 제48조의3제3항 -----

-----.

④ 법 제48조의3제3항 -----

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.

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하고,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④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⑤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.

---.

⑤ 법 제48조의3제4항 -----

-----.

⑥ 법 제48조의3제4항 -----

-----.

⑦ ----- 법 제48조의3제6항

--- 제3항-----

-----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56조의7(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⑧ ----- 제7항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56조의7(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(이하 “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피보험자관리 등 지원금: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신고와 제56조의6제2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

2. 징수사무 지원금: 법 제48조

의4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를 기한 내에 한 경우

④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수행한

<신 설>

보험사무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.

-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험사무를 이행한 때 분기가 끝나는 날(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말한다)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